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회)	

악취방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악취방지법이 개정('23.03.28, 시행 '23.09.29)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주체 및 대상 규정(안 제8조의2제1항)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이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존 규정에 따른 악취저감기술 지원 대상 사업장을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

나. 환경부장관의 권한 위임(안 제9조제1항제1호 신설)

악취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립한 개선 계획의 접수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악취저감기술 지원의 대상 및 절차)”를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으로, “환경부장관이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이하 “악취저감기술 지원”이라 한다)”을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으로,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하 “악취저감기술 지원”이라 한다)”으로, “제외한다”를 “악취저감기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청하여야 한다”를 “신청해야 한다(환경부장관이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저감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의 접수

부 칙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u>악취저감기술 지원의 대상 및 절차</u>)	제8조의2(<u>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u>)
① <u>환경부장관은</u>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u>환경부장관이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이하 “악취저감기술 지원”이라 한다)</u>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u>악취저감기술 지원</u> 을 할 수 있다. 다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로부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u>제외한다</u> .	① <u>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u> <u>대도시의 장은</u> ----- <u>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u> ----- ----- <u>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기술적</u> ----- ----- ----- <u>악취저감</u> <u>을 위한 재정적·기술적</u> ----- ----- ----- ----- <u>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u> <u>(이하 “악취저감기술 지원”이라 한다)</u> ----- <u>악취저감기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u>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u>환경부장관이</u> 악취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3. ---- <u>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u> ----- -----

②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u>신청하여야 한다</u>.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필요한 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9조(권한·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 (생략) <u>< 신 설 ></u>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② ----- ----- ----- <u>신청</u> <u>해야 한다(환경부장관이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u>.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권한·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 (현행과 같음) 1. <u>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저감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의 접수</u> 2. 현행 1호와 같음 3. 현행 2호와 같음 4. 현행 3호와 같음 5. 현행 4호와 같음 6. 현행 5호와 같음 7. 현행 6호와 같음
---	--